

	특임교원인사규정	규정번호	3-3-18
		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일자	2017.05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특임교원의 자격,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특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 중 대학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,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이 우수한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
2.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임원 경력자
3.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본교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
4. 기타 총장이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
제4조(신규임용 직명) 특임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특임조교수로 한다.

제5조(임용절차) ① 특임교원의 임용은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과장 또는 부서장 추천서 1부
2. 임용지원서 1부
3. 학력(성적 및 졸업)증명서 각 1부
4. 경력증명서 각 1부
5. 자격증 사본(해당자) 각 1부

제6조(임용기간) ① 특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계약은 [별표1] 특임교원 재계약 평정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특임교원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
1. [별표2] 특임교원 강의충실도평가표의 ①의 평가점수가 36점미만 이거나, ②의 평가점수가 20점미만인 경우
2. 대학 특임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

③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제외자는 별도의 해임발령 없이 당연 퇴직한다.

제7조(복무) ① 특임교원은 대학의 교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특임교원의 책임 강의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,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③ 특임교원의 임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보수) 특임교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, 방법,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